〈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u>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 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등록번호]:20110100345 [정보공개서최초등록일]:2011.08.12

[정보공개서최종등록일]:

홈페이지:www.handymandr.co.kr 대표이메일:nks6004@naver.com

핸 디 맨 닥 터 정 보 공 개 서

(주)핸디맨닥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핸디맨닥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 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주소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13, 1층(양재동, 비전빌딩)

가맹본부대표전화번호 : 02-577-1182 가맹본부대표팩스번호 : 02-571-1212

가맹본부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577-1182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 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핸디맨닥터	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13, 1층(양기			대동, 비전빌딩)		
(주)핸디맨닥터	법인설립등기일	사	·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반	호	대표팩스번호
(구)엔디앤릭디	2010.04.09	2	010.04.20	남궁선		02-577-1182		02-571-1212
	법인등록번호		110111-43	25422	사업지	ト등록번호	2	214-88-5814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서최	는구 바우뫼로41길	13, 1층(양재동,		
				비전빌딩)			
대표이사	남궁선	핸디맨닥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남궁선	02-577-1182	02-571-1212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핸디맨닥터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핸디맨닥터	
상 호	핸디맨닥터점	- 핸디맨닥터는 주택,아파트,사
로고	(주)핸디맨탁티 HANDYMANDR.	무실 등 일상생활의 불편사항들을 Total One-Stop 으로 해결해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입니다.
상표(서비스표)	한다맨닥터 HANDYMANDR.	등록번호 : 4103407240000
그밖의 영업표지	BOOK STATE OF THE PROPERTY OF THE PARTY AND A SAME STATE OF THE PA	핸디맨닥터 캐릭터 및 차량등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2,432	277,320	-164,888	112,424	12,757	12,708
2022년	117,945	254,921	-136,975	157,290	25,077	27,913
2023년	106,130	188, 158	-82,027	212,710	51,286	54,948

그 근거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1 선언어구	И 	[연 작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남궁선	대표이사	2010.04.20 ~ 현재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	상근	비상근	의면구(8)
2023년 12월 31일	1	0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193 4		0015 10 07 53	E		2025.12.07
엔디맨틱틱	범위내에서	2015.12.0/ 등독	등록 4103407240000	남궁선	(2025.12.07)
HAMETMANER.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당사가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소유권자인 남궁선으로부터 상표사용을 승낙 받아 위 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사용기간까지 당사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1.02.28

직영점 경영기간: :2000.01.15 ~2010.08.20

2. [핸디맨닥터]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핸디맨닥터	핸디맨닥터	남궁선	2011.02.28 ~ 현재	바우뫼로41길 13,
				1층(양재동, 비전빌딩)

3. [핸디맨닥터]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핸디맨닥터	기타 서비스	수리 및 보수(전기,설비).인테리어,에어컨						
	기다 저미스	설치·철거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핸디맨닥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TIO	2	2021.12.3	1	2	2022.12.3	1	2	2023.12.3	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5	25	-	25	25	-	25	25	-
서울	15	15	_	15	15	_	15	15	_
부산	_	_	_	_	-	_	-	_	_
대구	_	_	_	-	_	_	-	_	_
인천	2	2	_	2	2	_	2	2	_
광주	1	_	_	_	_	_	_	_	_
대전	1	1	_	1	1	_	1	1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	_	_	_	_	_	-	_	_
경기	6	6	_	6	6	_	6	6	_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	_	-	-	_	_	-	_	_
충남	1	1	-	1	1	_	1	1	_
전북	_	_	_	_	_	_	-	-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바로 전 3년간 [핸디맨닥터]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5	_	_	_	_	25
2022	25	_	_	_	_	25
2023	25	_	_	_	_	25

6. [핸디맨닥터]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점사업자는 POS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공급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가맹점 희망자에게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매출액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 단 매출액		평균 (상한)		평균 (하한)	비고	
	7188 1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25								
서울	15								
부산	_								
대구	_								
인천	2								
광주	_								
대전	1								
울산	_								
세종	_								
경기	6								
강원	_								
충북	_								
충남	1								
전북	_								
전남	_								
경북	_								
경남	_								
제주	_								

8. 핸디맨닥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핸디맨닥터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5개	3,97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핸디맨닥터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구분	수단	지출 비용(단	비고			
구·正 	누긴	내용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_	0	0	0	
광고	비공개	비공개	0	0	0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유뱅킹사업부	각 지점 및 인터넷뱅킹	02-2002-4288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 체결일에 예치신청 하여야합니다. 예치방법은 귀하가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예치하는 방법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핸디맨닥터를 찾아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 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핸디맨닥터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약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 개시일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 범위내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30일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 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핸디맨닥터]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인테리어,차량,초도물품,공구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_	해당없음
기타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1,000]			
가맹비	2,200	계약체결과 동시	반환 안됨	가맹점 모집시 비용 소요
기술전수비 (교육비)	8,800	계약체결과 동시	교육 1일전 취소시 기술전수비용의 70%반환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안됨	기술전수비용 소요

2) 당사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합계	[11,000]
가맹비	2,200
기술전수비(교육비)	8,8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0,350				16.5㎡(5평)기준
인테리어	가맹점사업자	5,500	1,100			
공구	직접시공 또는	2,750				
초도물품	가맹본부	5,500		계약 또는 물품입고 시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차량	가맹점사업자	5,500			711 1 71	
OAフIフI	직접구매	1,100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1.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한다. 이에 당사는 통				
71 0U =1 01 TI	행인의 수·교통량 및 질·시장특성·통행인의 구매습성·주요한 근린시				
가맹희망자 	설·업종별 특성 등 을의 점포선정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다.				
	2. 가맹희망자는 당사에 점포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점포선				
	정에 대한 최종결정은 가맹희망자가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이사항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본사	가맹점사업자 분담금중 해당금액	발생시 통지	반환안됨	광고비용소요	-
신규 상품,용역 추가서비스 제공시	본사	수수료	발생시 통지	반환안됨	기술전수비용 으로 소요	원하는 기맹점시업자의 경우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정해진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_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영업 중 필요한 공급 받지 않고 있으므로 차액가맹금 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재고,회계처리)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 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핸디맨닥터]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에 2개월 전에 승인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기술전수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귀하는 즉시 [핸디맨닥터]임을 알 수 있는 상호·상표·서비스표·휘장·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를 하여 야 합니다.
- ※ 영업표지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 다.
- ※ 당사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 철거·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조치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액으로 가맹금(가맹비,기술전수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핸디맨닥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없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거래 상대방과 거래 형태를 지정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품목을 공급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핸디맨닥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핸디맨닥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당사가 [핸디맨닥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용역만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용역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수리 및 보수(전기,설비) 인테리어	본사에서 지정한 상품,용역 이외의 서비스 제공 금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에어컨 설치,철거		계약해지	

[※] 귀하가 위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와 반드 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조사와 상권,경쟁점의 판매가격을 고려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권장가격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가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520 G5 G7	가맹본부	계열회사
수리 및 보수(전기,설비).인테리어,에어컨	핸디맨닥터	
설치·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 앤디앤루디 -	_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200m	가맹계약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 역 재조정 등 조건 변경 에 대한 통지 →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한 가맹점사 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 경 완료 및 계약갱신	일 전까지 동의여부 회 신,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 등 계약 갱신 진행 후 신규 입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상품,용역 등을 홍보 또는 광고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본부 에게 영업지정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로 인해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지 않고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핸디맨닥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핸디맨닥터]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 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 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 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①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0조 2항 1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10조 2항 2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10조 2항 3가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조 2항 3나
○ 핸디맨닥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조 2항 3다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 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 가맹본부의 기술교육, 경영지원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한 경우	1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기술전수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와 동종의 영업을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본 계약의 범위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7 H 200 11 T H C	관련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 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	
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	
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	
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	 11조 2항
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	117 79
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	
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	
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의 변경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 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기술전수비,계약이행보증금 입금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운영팀 (02-577-1182)

- ※ 귀하가 운영하는 [핸디맨닥터]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 2개월 전에 승인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기술전수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에는 가맹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신청과 함께 가맹점의 집기, 설비, 시설물, 인테리어 등의 점검을 의뢰하고 교체·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보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 지역내에서 본 계약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당사에 통지 →가맹점운영권 상속완료	
대리행사	당사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대리인 당사 운영 팀 면담 후 대리인지정 승인	

- ※ 상속의 경우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맹비를 면제하며, 교육이 필요할 경우 상속인은 기술전수비를 교육 1일전까지 지불해야 합니다.기술전수비 외 당사가 상속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신규 상품, 신규 용역,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상속인에 한해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의 존속 중에는 영업지역과 영업지역 외에서 귀하가 [핸디맨닥터]와 동일 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핸디맨닥터]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는 경우에는 휴업하기 7일 전까지 담당팀에 신청하여 당사의 승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3) 권장 종업원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수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브랜드광고	50%	50%	행사기획 → 비용산정 →	
광고 전체 행사	가맹점모집광고	100%	0	행사내용및분담내역 통보 → 비용분담수락여부확인 → 행사진행 → 분담분	
	브랜드광고+ 가맹점모집광고	75%	25%	본사입금	
판촉행사 (개별행사)		가맹점이 10 에 따라 달라?		행사계획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가맹점행사참여결정→ 가맹점부담액입금→행사진행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위반, 영업비밀준수의무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거 손해액을 당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2) 귀하가 기타 제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가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 5) 귀하는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시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42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 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 해보상보험체결	D-27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6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5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	
교육 실시/집기셋팅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0-1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 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 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 으로 인하여 가맹사업 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 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O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 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 일성과 무관하게 가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포환경개선 : 40%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 매보보 보다애요 기	터 3년 이내에 가맹 본부의 책임없는 사 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 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 나 이미 지급한 경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 –			–	·	1

가맹본부 요청 시	경영활성화를 위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 도가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상으 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필요 시 가맹본부에	부담	문의: 운영팀 (02-577-1182)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 법 및 일정을 안내하 고 이를 귀하가 동의 하면 진행함	가맹점사업자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귀하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ㅇ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핸디맨닥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기술,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핸디맨닥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부가세포함)	비고
신규교육(기술전수)	20일	일반 [8,800]	최초계약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는 개업 시 교육에 불참할 경우 가맹점을 개업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_	_	1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_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_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전화])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금 예치 신청서						처리기간	
		•	10 0 MV	L'0'	`1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상호명(영업표지)		(²	주)핸디민	밴닥터(핸	기맨닥터)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	주소(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13, 1층 비전빌딩)			층(양재동,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	청인의 계좌						
가밍	생본부의 계좌						
	!사업거래의 공정! 2항에 따라 위와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۱					
	귀i 지점장	٦L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